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정 통계교육원 훈령 제27호 2019.04.19.

개정 통계교육원 훈령 제29호 2021.11.29.

일부개정 통계인재개발원 훈령 제4호 2025. 2.25.

일부개정 통계인재개발원 훈령 제8호 2025.11.10.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훈령 제4호 2026. 3.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중·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해결 방법(탐구 방법), 통계분석 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을 포함하여 한 장으로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
2. “초등부”란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3. “중등부”란 국내에 있는 중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4. “고등부”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제3조(참가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팀원 구성을 통해 참가한다.

- ② 팀원 구성은 3인 이하의 참가자(1인 가능)와 지도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학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대안교육시설장 등) 또는 보호자(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 참가 가능하다.

- ③ 지도교사는 여러 팀에 소속·지도 가능하나, 참가자는 1팀에만 소속한다.

제5조(참가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대회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 ② 대회참가 등록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참가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제6조(작품제출) ① 참가자는 직접 기획·연구·제작한 통계포스터를 제출한다.

② 팀 단위로 출품하며, 1팀당 1작품만 출품한다.

③ 작품은 제5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④ 1차 심사 통과자는 2차 ~~심사를 위해~~ 실물 통계포스터를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한다.<삭제 2026. 3. 30.>

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제출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대회 개최 전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면심사로, 2차 심사와 3차 심사는 대면심사로 한다.<개정 2026. 3. 30.>

제8조(심사방법) ① 1차 심사는 제출된 모든 통계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

1. 1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중·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1차 심사에서는 초·중·고별로 각 39팀을 선정한다. 단, 선정팀 수는 지역별로 출품된 작품 수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

1. 2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중·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최종상격은 2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초·중·고별 상위 2팀을 제외한 은상이하의 상격을 결정한다.<개정 2026. 3. 30.>

1. 점수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의 취득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2. 모든 점수가 같을 경우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④ 3차 심사는 2차 심사 결과 초·중·고별 상위 2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신설 2026. 3. 30.>

1. 3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3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초·중·고별 대상과 금상을 결정한다. <신설 2026. 3. 30.>

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대회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응모자와 동일 학교 교사 여부, 응모자와 인척관계 여부 등)를 검토 후 선정·위촉한다. <개정 2026. 3. 30.>

제9조(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대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제10조(포상 등) ① 통계활용대회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상격은 별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시상 내역”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11.10.>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3.30.>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시상 내역< 개정 2025. 11.10>

구분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시상	초·중·고 각 1팀 (3팀)	초·중·고 각 1팀 (3팀)	시·도별 초·중·고 각 1팀 (51팀)	초·중·고 각10팀 (30팀)
참가자	교육부장관상	국가데이터처장 상	시·도교육감상	국가데이터처장 상
	장학금100만원	장학금50만원	장학금20만원	장학금10만원
지도 교사	국가데이터처장 상	국가데이터처장 상	국가데이터처장 상	국가데이터처장 상
	연구비 50만원	연구비 30만원	연구비 20만원	연구비 10만원
학교	단체상(초·중·고 각 1개교) : 국가데이터처장 상패 및 연구비 100만원			
· 장려상(30팀) : 국가데이터처장 상장 - 2차 심사팀 중 동상 이상 비수상팀				